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경상남도
www.gyeongnam.go.kr

공 보

제2617호 2023. 6. 13.(화)

발행 : 경상남도 편집 : 소통담당관실(055-211-2065, 행정 2065)

경 남 공 보

제2617호 2023. 6. 13.(화)

조 례

제5391호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2

제5392호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4

제5393호 경상남도 ESG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 5

제5394호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 6

제5395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9

제5396호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0

제5397호 경상남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 14

제5398호 경상남도 사회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 15

제5399호 경상남도 헌혈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 18

조 례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인

2023년 6월 13일

◉ 경상남도 조례 제5391호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를 “「경상남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기술창업”을 “기술창업 및 신산업창업”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창업”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도전하는 창업을 말하며, 기술창업의 업종은 별표와 같다.
2. “신산업창업”이란 기존 산업을 융복합하거나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을 기반으로 하여 창업하는 것을 말하며, 신산업창업 분야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것과 같다.
3. “경남대표 기술창업기업”이란 성장가능성, 매출증대, 투자유치 실적이 우수하여 제16조에 따라 도지사가 인증하는 도내 기술창업기업을 말한다.
4. 그 밖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중 “기술창업”을 “기술창업 및 신산업창업(이하 “기술창업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중 “기술창업”을 “기술창업 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창업을”을 “기술창업 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기술창업”을 “기술창업 등”으로 한다.

5. 신산업창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6조의 제목 “(기술창업지원 사업)”을 “(기술창업 등 지원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창업”을 “기술창업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기술창업지원”을 “기술창업 등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7호”를 “제8호”로, “기술창업지원”을 “기술창업 등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신산업창업 활성화에 관한 사업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창업 촉진”을 “기술창업 등 촉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술창업지원”을 “기술창업 등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술창업”을 “기술창업 등”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기술창업기업 자금 지원)”을 “(기술창업 등 기업 자금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기술창업기업”을 각각 “기술창업 등 기업”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기술창업 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기술창업 등 기업제품 구매 촉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기술창업기업”을 “기술창업 등 기업”으로 한다.

제15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창업지원시설의 입주자 및 이용자에게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등(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부담금을 산정하거나 감면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6조의 제목 “(시행규칙)”을 “(경남대표 기술창업기업 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제2조에서 정의한 경남대표 기술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남대표 기술창업기업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별표 제목 “기술창업 업종(제2조제1항 관련)”을 “기술창업 업종(제2조제1호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인

2023년 6월 13일

◉ 경상남도 조례 제5392호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을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지역인재 양성 및 평생교육 진흥사업”으로 하고,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을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평생교육진흥”을 “지역인재 양성 및 평생교육 진흥”으로 한다.

9. 지역인재 양성 지원

제24조제1항 중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지역인재 양성 및 평생교육 진흥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평생교육진흥”을 “지역인재 양성 및 평생교육 진흥 ”으로 하며, “교부결정”을 “교부 결정”으로 한다.

제25조 중 “지원 받은”을 “지원받은”으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따라 설치·운영된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본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ESG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인

2023년 6월 13일

◉ 경상남도 조례 제5393호

경상남도 ESG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기업의 ESG경영 확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ESG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기업의 ESG경영 확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도지사는 ESG경영 확산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상남도 ESG경영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ESG경영 확산 및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
2. ESG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 조성 지원 계획
3. ESG경영 확산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ESG경영 확산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① 도지사는 도내 기업의 ESG경영 확산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ESG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경영 평가 관련 컨설팅
3. 그 밖에 도지사가 ESG경영 확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법인·단체, 연구소, 대학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자문단 구성・운영) 도지사는 ESG경영 확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SG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ESG경영 확산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인

2023년 6월 13일

◉ 경상남도 조례 제5394호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소상공인・중소기업・대기업”을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대기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를 “상호간 동반성장을 도모하며,”로 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불공정거래행위”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를 말한다.

8. “지역상생구역”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9. “자율상권구역”이란 「지역상권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10. “활성화구역”이란 제8호 및 제9호의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말한다.

제4조 중 “기업 및 관련단체, 주민 등은”을 “기업, 관련단체 및 주민 등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수립·시행”을 “수립·시행하여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매입하고자 하는”을 “매입하려는”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경상남도상생협의회 설치)”를 “(경상남도 상생협의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생협력을”을 “상생협력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방안 및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 조정”을 “방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그 밖에 상생협력”을 “상생협력”으로, “제도개선 등”을 “제도개선”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경상남도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지역상권위원회(이하 “지역상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해제
2. 활성화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
3.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에 관한 사항
4.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제한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5.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상남도 지역상권위원회는 제10조의 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중 “포함한 15명 이내”를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선하고”를 “호선(互選)하고”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 소속 상생협력 및 지역상권 업무 담당국장
7.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8.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또는 법무사 등의 자격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9. 법학, 경제학, 경영학, 도시재생, 도시개발, 도시계획, 관광, 마케팅 분야 전문가 또는 대학교·연구소 등에서 교수(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11. 그 밖에 공정거래, 상생협력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제4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개의하고”를 “개의(開議)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상생협력업무”를 “상생협력업무 및 지역상권 업무”로 한다.

5.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직무상·직업상 이유로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협의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하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의 제목 “(갑질신고센터 설치)”를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갑질신고센터”를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로, “설치·운영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갑질피해”를 “불공정거래 피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갑질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갑질피해”를 “불공정거래 피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중 “갑질행위”를 각각 “불공정거래행위”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갑질피해 법률지원단 운영)”을 “(불공정거래 피해 법률지원단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갑질피해를”을 “불공정거래 피해를”로, “갑질피해 법률지원단”을 “불공정거래 피해 법률지원단”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인

2023년 6월 13일

◉ 경상남도 조례 제5395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2022년”을 “2023년”으로, “2022년 7월”을 “2023년 7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인

2023년 6월 13일

◉ 경상남도 조례 제5396호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저상버스”란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를 말한다.
3.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4. “광역이동지원센터”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시켜주는 도 단위 이동지원센터를 말한다.
5. “점검”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사전점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이동편의시설의 공사 신고나 허가 시 또는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설계도면 검토 또는 현장점검을 통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기준에 맞게 설치되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사후점검: 대상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른 시·군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자문) ①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사업에 대하여 「경상남도 교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교통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2.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도지사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저상버스 도입 및 계획) ① 도지사는 저상버스 도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내 및 농어촌버스 등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정류장과 보도 및 도로 정비
3. 교통약자의 시외버스 이용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시·군에서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저상버스 도입에 추가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저상버스의 운영) ① 도지사는 저상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10조(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①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시·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군 이동지원센터를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시·군 간 이동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을 지원하여야 하며, 24시간 상시 운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⑤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기능) 광역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승차 이용신청 접수 및 관리
2. 제1호의 업무에 필요한 전산망 등 통신수단의 구축·운영 및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지원
4.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사항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5. 그 밖에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특별교통수단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도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군별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이용 요금 및 운행 대수
2. 광역이동지원센터 종사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및 서비스 편람 발간 · 배포
3.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유지보수
4.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교통수단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도입·운영 지원)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교육) ①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수종사자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하며, 모든 운수종사자는 성실히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약자의 이해 및 유형별 특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외부기관에 위탁하거나 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마련하여 시장·군수에게 이행 권고를 할 수 있다.

제15조(이동편의시설의 점검) ① 도지사는 도가 지도·감독하는 대상시설에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준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시기 및 방법 등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6조(점검반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위촉하여 점검반을 구성한다. 이 경우 점검반에는 점검 대상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1명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1. 도 소속 공무원
2. 제1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직원
3. 교통약자 중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내용과 관련 있는 사람
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점검 대상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5.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점검반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점검 업무
2.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작성

③ 점검반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고서의 목적 외 사용 금지
2.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점검 등의 업무 참여 금지

제17조(점검 결과의 보고 및 활용) ① 점검반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사람 모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제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점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조치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보고서의 검토 및 점검 결과의 반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점검에 관한 협조) ① 도지사는 점검반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관련 대상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등에게 점검의 취지를 알리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점검반의 효율적 점검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반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이동편의시설을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 “이동편의기술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이동편의기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점검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술 지원, 정보 제공 및 교육
3. 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적합성 심사 관련 컨설팅
4.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인력,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0조(이동편의기술센터 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지원 관련 사업을 수행할 전담조직·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사단법인
2.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지원 관련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제21조(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하여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에게 법 제10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콜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콜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광역이동지원센터”로 본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인

2023년 6월 13일

◉ 경상남도 조례 제5397호

경상남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게임산업”이란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게임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제작·유통·이용제공 및 이에 관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 ① 도지사는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경상남도 게임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게임산업 진흥 정책 및 추진체계
3.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4.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5. 게임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
6.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
7. 그 밖에 도지사가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도지사는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차세대 게임인재 양성
2. 게임제작 및 유통 지원
3. 게임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4. 국제게임전시회 유치 및 개최 지원

5. 게임과몰입 예방·상담 및 치료
6. 그 밖에 도지사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경상남도 게임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주기업 창업 공간 운영
2.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3. 창업지원 및 게임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4. 게임과몰입 예방, 치료 및 건전한 게임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게임산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포상) 도지사는 게임산업 진흥에 공로가 큰 개인 및 기관·단체 법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사회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인

2023년 6월 13일

◉ 경상남도 조례 제5398호

경상남도 사회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하여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도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이란 지역사회를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 또는 재능을 제공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공헌자”란 제1호에 따라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3. “사회공헌 인증”이란 사회공헌 활동 실적이 우수한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에 그 우수성을 인정하여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사회공헌 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활동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공헌 관련 도민참여 활성화 방안
2. 사회공헌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3. 사회공헌 관련 정보제공 및 연구지원
4. 사회공헌 자료집 발간
5. 그 밖에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회공헌 인증) ① 도지사는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에 사회공헌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회공헌 인증을 받은 자에게 사회공헌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문서 또는 사무실 등에 사회공헌 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인증 표식, 수여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제5조(사회공헌 인증의 취소 및 환수) 도지사는 제4조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 및 환수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2.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3. 인증을 받은 자가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증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6조(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명예의 전당 등재
2.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 기업 또는 기업인으로 선정
3.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주관하는 주요 행사 초청 및 공연·전시 관람권 지급
4. 도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주차료, 관람료 등의 감면

② 그 밖에 사회공헌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표창) ① 도지사는 사회공헌 업적이 우수한 사회공헌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1. 나눔부문: 물적 자원을 이용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자
2. 섬김부문: 인적 자원을 이용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자

3. 베품부문: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의 결합을 통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표창 수여 대상자를 추천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2. 사회공헌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3. 도민 50인 이상의 추천 동의를 얻은 추천인

4. 시장·군수

③ 그 밖에 표창 수여 대상자의 추천 및 선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사회공헌위원회) ① 도지사는 사회공헌사업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경상남도 사회공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공헌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회공헌 인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공헌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사회공헌정보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사회공헌 시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사회공헌정보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사회공헌주간) 도지사는 매년 1주간을 사회공헌주간으로 지정할 수 있고 사회공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공헌정보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경상남도 사회공헌정보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사회공헌장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을 “사회공헌 인증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는 폐지한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헌혈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인

2023년 6월 13일

◉ 경상남도 조례 제5399호

경상남도 헌혈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남도 헌혈장려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남도 헌혈 권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경상남도 내 헌혈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및 단체 등이 헌혈을 권장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혈액원”이란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혈액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권장활동계획) ① 도지사는 도민의 헌혈을 권장하기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경상남도 헌혈권장활동계획(이하 “헌혈권장활동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헌혈권장활동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활동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활동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헌혈권장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헌혈권장활동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내 혈액원과 그 밖의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 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활동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헌혈권장활동계획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도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상남도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헌혈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기부문화 확산 방안
4. 그 밖에 헌혈 및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헌혈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헌혈기부문화 확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경찰청, 도내 군부대, 의료기관, 언론기관, 민간단체,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등)의 관계자
2. 경상남도의회 의원
3.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도민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및 포상) ① 도지사는 도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헌혈과 헌혈 권장에 특히 공이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상의 종류와 방법 및 절차는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헌혈장소의 설치·지원) 도지사는 「혈액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혈액원이 쾌적하고 안전한 헌혈을 위한 공간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사업소
2.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관리·운영하는 장소
3. 그 밖에 도지사가 쾌적하고 안전한 헌혈을 위한 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장소

제13조(헌혈을 한 도민 지원) ① 도지사는 도 소재 혈액원에서 헌혈을 한 도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가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 초청
2. 표창장 또는 감사장 수여
3. 그 밖에 도지사가 도 소재 혈액원에서 헌혈을 한 도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간 및 횟수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4조(정보제공 및 홍보) ① 도지사는 헌혈권장활동과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 및 방법을 통하여 도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도 누리집(홈페이지)
2. 도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또는 옥외광고물
3. 도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도지사가 헌혈권장활동과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에 용이하다고 판단하는 방법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활동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